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12-2번지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6. 6. 23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진아건설주식회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				
	지 번	1912-2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26,84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3,520.8985㎡	건폐율	13.12%	층수 지하: 2층/지상: 20층
	주 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 근린생활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5동
	최고높이	59m	용적률	130.93%	연면적 합계 49,903.1098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- 사전 검토에서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함. 단, 구조도면이 시공하기에는 단면상세 및 배근상세 등이 많이 부족하므로 답변서에 기재한 대로 보완한 후 제출하고 골조공사단계에서는 반드시 관계 법령에 의거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 바람. - 사전검토 4번과 관련하여, 지하벽체 해석 시 적용한 하부 고정도 0.14는 지하 내수압 슬래브의 하부근 배근량에 따른 휨강도(strength)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슬래브 두께, 벽체 두께 및 벽체-슬래브 접합부의 회전강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 바람. - 추가된 전단배근상세도에 전단보강근의 갈고리 상세도 추가하기 바람. - KDS 14 20 20의 4.2.2의 휨부재의 최소철근량 기준의 (1)또는 (2)를 만족하는지 검토하기 바람. - 슬래브 장기처짐 검토시 경간 단부 벽체부위는 균열모멘트를 초과할것으로 보이므로 확인 바람. - 굴착공사시 조치계획을 이행하시어,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. - 사전검토의견 중 착공전 조치사항에 대하여 공사 착수 전 이행하시기 바람,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시기 바람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